

정치 관악유권자연대

2 정책워크숍

일시 : 2010년 3월 16일(화) 저녁 7시

● 장소 : 서원동 문화의집

목차

2 정책워크샵안내 3p

정책목록 4p

인권마을정책 6p

복지마을정책 41p

생태마을정책 50p

민주주의마을정책 61p

협동경제마을정책 66p

2차 정책워크숍 안내

<진행 순서>

- 7시-7시10분 : 유권자연대 정책작업 경과 및 워크숍 안내
- 7시10분-7시40분 : '인권'분야 정책나눔 및 우선순위 정하기
- 7시40분-8시10분 : '복지'분야 정책나눔 및 우선순위 정하기
- 8시10분-8시40분 : 생태 * 민주주의' 분야 정책나눔 및 우선순위 정하기
- 8시40분-9시10분 : 협동경제 분야 정책나눔 및 우선순위 정하기
- 9시10분-9시30분 : 결과 종합 및 후속안내

<워크숍 안내>

1> 각 분야별 정책발표는 작성하신 분들이 2분 이내로 발표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작업하신 자료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한 관악유권자연대회원

김진숙 남우근 박인혜 안성진 오치성 윤형환 이종환 이주희 이빈과 주성호 채진희 황호완 홍만형 홍선

2> 10분 정도 각 정책을 풍부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안들을 받습니다.

3> 각 분야별 정책중 가장 시급하거나 필요한 정책(우선순위)을 선택하셔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인권분야 3개, 복지분야 3개, 생태*민주주의 분야 4개, 협동경제 1개)

4> 우선순위 정책을 함께 결정해보는 작업은 관악유권자연대 10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 기초작업입니다.

5> 우선순위 정책은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다
- ② 활동가입장이 아닌 유권자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 그래서 공감을 높일 수 있다
- ③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 그래서 함께 평가할 수 있다.
- ④ 여러분의 우선순위 정책의 기준은?

6> 종합 및 후속안내는 각 분야별 선택한 우선순위 정책을 확인하고 후속과제를 안내합니다.

7> 후속작업은 3월 17일(수)-3월 21일(일)까지 관악유권자연대회원들에게 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택설문작업을 진행합니다.

8> 1차, 2차워크숍, 유권자연대 설문조사를 정리하여 관악유권자연대 정책자료집을 발간합니다. 3월 26일 후보선출 정책토론회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9> 오늘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내용들은 관악유권자연대 카페 '주민이 만드는 정책' <정책제안합니다> 게시판에 21일까지 정책관련 의견이나 제안, 견해들을 올려주세요

정책목록

어린이정책

추후작업

청소년정책

청소년의회설립

청소년 참여 증대를 위한 기존 청소년 문화 정책 개선

여성정책

기업의 '여성고용 목표평가제'

'공공산후조리원'설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어르신정책

일자리공급확대와 다양한 일자리창출

경로당운영의 내실화

장애인정책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

무장애공간(Barrier Free Zone) 시범 실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제정

장애인 휠체어 수리등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주민정책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와 지역정보에 대한 정보권확보

공공기관 통번역 도우미제도 운영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확대 실시

복지마을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모든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실시

보육교사 8시간 노동보장

교육정책

친환경무상급식
관악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악구 청소년 문화생활지원

의료정책

보건지소 예방기능강화
주치의제도단계적실시

주거정책

종합적인 주거복지 상담창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문화정책

관악구 미디어센터건립
관악구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책읽는 마을, 마을 도서관 확산

추후작업

민주주의마을

주민참여예산제실시
정책실명제·의원투표실명제
개방형인사위원회구성

협동경제마을

관악구 주민이 함께 하는 생활협동조합 만들기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자 및 퇴직자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창업전문재단설립

존중받는 기분좋은 정치,
차별이 되지 않는 인권마을

◎ 이주여성 종합상담센터

- 지역의 변화
 - 다문화 가정, 이주인에 대한 관심 ↑
 - 편견, 차별 ↓. 이주민의 권리보장
 - 이주민들,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 정책실행 방법
 - 지역기관 네트워크 - 실태·욕구조사
 - 광역구로 연 상담 정보제공 행정시스템
- 관심주인들
 - 이주여성 및 가족 - 유학생(서민)
 - 이주노동자, 사업주 - 다문화 정보 관심있는 사람
- 힘끼려 만드는 방법
 - 당사자 모임. - 지역기관 네트워크
 - 당사자가 증가는 다문화 축제
 - 다문화가정 지원 연계

청소년의회 설립

<필요성>

관악구 안에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의 장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된 장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청소년 보호육성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이다.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이 알지 못하는 청소년 정책보다 발전적 형태의 참여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청소년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청소년 시설을 운영 등의 정책을 넘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 등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 과제]

1. 청소년 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 운영 방안

- 1)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 2)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 3)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4)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청소년 참여 증대를 위한 기존 청소년 문화 정책 개선

<필요성>

청소년 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욕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지자체에서는 이와 거시적인 청소년 문화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 관련 문화 정책들은 몇가지 청소년 행사 진행이 전부인 실정이며 그마저도 인지도가 낮고 청소년단체에 위탁 진행하고 있다. 관악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관악구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과제>

1.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전체적인 문화프로그램 제편

-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한 청소년 문화 행사를 제편한다. 기존에 하는 청소년 한마당 운영,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서울유스챔피언 지원, 외국어경진대회 등을 유지, 개편하여 관악구 전체의 청소년들의 욕구가 담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으로 변경한다.

2.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등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에 청소년 기획단 설립한다.

- 청소년들의 문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손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여성고용평등을! 조달참여 기업의 '여성고용 목표·평가제'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취업 여성 노동자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맞물려 나타나고, 승진·배치·교육상의 간접차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민간 기업에 관행으로 굳어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고용을 늘리는 데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 사업체(내자구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40% 수준이다. 이들 기업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 집중직종의 비정규직화·저임금 문제를 개선한다면 지역 내 다른 민간기업의 고용차별 개선에도 일정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조달참여 기업의 여성고용 정도를 평가하여 조달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책과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 근거와 절차 마련
- 여성 고용 목표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제정함
-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간접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성을 높여 나감.
- 지자체 산하 지역 여성고용 현황 조사, 각 기업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시스템 마련

※ 평가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노동자 비율, 성별 급여수준
- 모집과 선발, 승진, 전보, 교육과 훈련, 근무조건 등에서 남녀 차별이 있는 지 여부

못 가고 비싸서 못 가던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필요성]

임신에서 출산까지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약 50~70%를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전 진찰비용(70만원) 중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평균 48만6천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비는 고운맘 카드(전자 바우처 형태)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2010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예정), 1회 4만 원 이하 5회 이상 나눠 쓸 수 있다. 그리고 분만 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65%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98만 원 이하)에 2주 동안 산모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는 정도이다.

[표15-2] 임신, 출산 관련 1인당 평균비용 실태조사(2007년)

구분	총비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용	
산전 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7.6%)	
		본인부담	급여	7.4만원(4.0%)
			비급여	48.6만원(26.3%)
분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37.3%)	
		본인부담	46.0만원(24.8%)	
합계	185만원	-	185.0만원(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한편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 27개(2008년 9월 기준)로 임신부의 산전 진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과 산후 조리도 어려워 원정 출산과 원정 산후조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가 2008년 처음으로 버스를 개조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임신부 건강검진을 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고운맘 카드로 임신, 출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너무 멀어서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임. 출산률 급감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산부인과 의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바우처 방식의 지원은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지방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등의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지역에서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가 가능하게 해야한다. 2008년 성남시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충청남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홍성의료원 리모델링 작업에서 200~300병동 규모의 산후병동을 건설하여 산후조리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정책과제]

- “산후 조리 도우미 사업” 확대
- 산부인과가 없는 전국 27개 시군구(2008년 9월 기준)에 지역 내 대형병원과 연계한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공공 의료시설 운영
- 기초 자치단체에 1곳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성 평등한 가족문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필요성]

최근의 추세로 보면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닌, 주거를 함께 하며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단위로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실제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족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양육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빈곤의 고통,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 현재 12만 명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며, 이주 여성 가구의 빈곤과 자녀 교육, 부부 폭력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등 개별적 조례가 아닌, 다양한 가족들이 존중받고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적인 가족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더불어 민주적인 가족공동체 형성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저소득 가족의 지원 및 복지 증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고려한 상담·교육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정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 “가족 지원 조례”제정

-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며, 한부모, 결혼이민자가족, 미혼모가족, 장애가족 등에 대한 정서심리적·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과 정책 생산을 위한 통합적인 조례 제정.

- “가족정책위원회”구성 및 “가족정책지원센터”설치

. 설치근거 : ‘가족 지원 조례’제정, 지자체 책임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

. 참여대상 :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법원, 가족관련 기관과 단체, 여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 운영방식 : 가족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 분기별 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며, 산하에 한부모 가족·결혼이민자가족·미혼모가족 등 특성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시도·권역별로 1곳씩 운영하도록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활용.

- 주요사업 : 한부모가족, 미(비)혼모가족의 빈곤 예방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결혼 이민자 여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다양성이 수용되는 정책 수립. 성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저소득 가족의 노동권과 사회권 정책 개발과 현실화. 전통적 가족개념 및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사업 실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가족 정책 개발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저소득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가족상담,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직업 연계

[기한]

- “평등가족지원 조례”제정 (2010년) → [가족정책위원회] 구성 [가족정책센터] 설치

[재원]

- 여성가족부 예산 + 지자체 예산 + 지역내 민간·공공기관 예산 및 자원 활용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공급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개발

[필요성]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7%)에 진입하였고 향후 8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자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자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악구의 경우 노인의 비율이 2008년 기준 약 44,843명으로 구민 전체인구(551,873명)의 8.1%를 차지하며 2005년 이후 3년간 전체인구 대비 1.6%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유지, 삶에 대한 자신감, 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얻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형 일자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양적확대와 더불어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관악구는 올해 국, 시비를 포함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지역에 838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11억 6천구백만원의 예산으로 590개의 일자리를 만든 지난해에 비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관악구의 65세 이상 노인 44,843명의 (지난해 기준) 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구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3개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의 유형으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분류되며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올해 422명을 지원하여 전체 일자리 838여개 중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만으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 과제]

1. 노인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한다.

1-1. 노인 일자리 지원예산을 확보한다.

1-2. 관악지역의 노인인력 정보를 체계화하고 사후서비스를 통해 고용지속성을 확보한다.

2.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양화 한다.

1-1.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들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분야의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한다.

1-2. 지역의 민간기업에 고령자 고용을 홍보하여 구인처를 확보하고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시설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좋은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경로당에서 쉼과 여가를 즐기고 건강과 교양을 증대 시킬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육문화 및 휴식제공, 지역문화 공간으로의 역할과 동시에 단순한 친목도모의 기능에서 지역노인들의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고 노인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복지관이나 기타 노인서비스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에 곳곳이 자리잡고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관악구의 경우 경로당이 매해 증가하여 현재는 구립47개, 사립 62개로 총 109개소가 있다. 관악구 통계에 따르면 지역주민 대상 욕구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은 경로당(3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효과성(실질적 도움)이 가장 떨어지며 서비스 이용절차와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복지시설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로당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책 과제]

1.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1-1. 경로당 운영실태 및 노인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다양한 여가, 건강, 생활 지원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정책 과제]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조례 참조

2.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 제도를 확대 실시 해야 된다.

- 중증장애인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현 보건복지가
족부의 활동보조예산이 부족하여 신규 신청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 장애인복지예산이 부족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1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각지대인 2급장애인 선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성]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1. 조례란 무엇인가?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¹⁾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조례는 법규의 성질(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규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례는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내부적 규율)을 가지는 것도 있다.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의원 발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써 제안한다.

1)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조례는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근거 : 조례제정의 합헌성·합법성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헌성과 합법성을 가진다.

① 조례는 헌법에서 근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닌 한 조례제정에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적극적 급부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③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헌법 제34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현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입법조치이므로 이는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합헌성을 가진다.

④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라고 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수익적 조치나 급부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어 합헌성을 가진다.

⑤ 조례는 일반적인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도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현행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는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충분히 합법성을 갖는다.

3. 장애인복지법과 자립생활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 그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적극적인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적극적인 개정논의가 여야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논의에 있어 핵심사항 중 하나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지금까지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복지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운영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장애인복지법」 또한 이러한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파견 및 장애동료간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2007년 3월 6일에 이루어내었다. 자립생활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4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한 시책의 강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활동보조인파견제도 및 장애동료상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자립생활지원이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우선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을 명시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을 담았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활동보조비 지급,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의 연구, 자립생활지원 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4.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에 관한 제언

이제는 우리가 자립생활지원 제도를 「장애인복지법」 과 조례를 통하여 어떻게 정착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은 향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일본보다 20~30년 늦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는 이들 나라들의 예를 수용하기에도 바빴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12년이 흘러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 및 조례규정을 포함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하여 자립생활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과 내용들을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모형의 핵심적인 중증장애인의 이용시설이다. 자립생활센터가 하여야 할 일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생활모형에 주거모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중증장애인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1인 자립홈생활모형과 가족생활모형 및 공동생활모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모형이 가족생활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립생활의 주거모형 역시 자립생활지원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립생활지원시설에는 비주거시설로서 자립생활센터와 주거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이나 1인 자립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대상의 문제이다. 미국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요건으로서 전 장애영역 포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영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즉 센터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중증에 해당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장애유형에 비추어 볼 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및 정신적 장애(특히 정신지체나 자폐 등의 발달장애)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1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명시된 중증장애인(지체1, 2급, 뇌병변 1, 2급, 정신지체 3급, 중복장애)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사업은 활동보조사업이다.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보와 활동보

조인의 신분보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활동보조인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활동보조인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의 장애인복지 관련 세계적 추세는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수는 1,669,329명이며, 등록률은 77.7%로 실제 장애인 인구는 2,148,686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재가 장애인이 2,101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7.8%가 재가 장애인이다. 이러한 장애인 중 약 64.6%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5%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7.4%, 대부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9.2%로, 합계 16.6%의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종별로는 발달장애(91%), 정신지체(82.1%), 뇌병변(76.1%) 순으로 타인의 도움에 대한 필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86.7%이며, 없는 경우는 13.3%이지만, 도움제공자의 대부분이 92.5%는 가족구성원(배우자 47.1%, 자녀 21.8%, 부모 18.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구성원 위주의 도움 제공은 가족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2004년 서울시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가족의 64.6%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59.4%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제공자의 외부인 활용 의사에 대해서는 38%가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5%이고 ‘유료라도 이용하겠다.’고 한 경우는 2.9%에 불과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면, 약 215만 장애인 중 35%에 해당하는 75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중 34만 명은 긴급히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인구로 추정 할 수 있다.

[현황과 문제점]

관악구의 2006년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15,196명으로,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에서 노원구(20,915명), 강서구(19,107명),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에 제정되었지만, ‘장애인자립생

활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수 요소인 '장애인활동보조인 확대 파견'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무장애공간(barrier free zone) 시범 실시

[필요성]

관악구의 2006년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15,196명으로,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에서 노원구(20,915명), 강서구(19,107명),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1급은 1,274명, 2급은 2,600명, 3급은 2,642명으로 중증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악구의 경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이용할만한 식당, 병원, 미용실, 은행 등 생활근린시설이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 환경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이 개선되어야 한다.

무장애공간(barrier free zone)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한 지구를 말한다.

[정책 과제]

1. 무장애공간(barrier free zone)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 편의시설 조사평가 기관을 재심의 및 역량 있는 기관으로 선정 및 감독역할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건물등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 접근성이 많은 지역 위주(지하철 부근,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등)로 미설치부분에 대해 지원 및 개선 방법에 대해 제시가 필요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필요)

장애인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장애인 체육 진흥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언어발달, 대인관계, 일상적 행동을 비롯한 적응기능 전반에서 현저한 발달지연과 결함이 나타나는 장애를 말하며, 장애는 15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폐증, 뇌성마비,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로 일상생활 및 운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 비만과 2차적인 질병으로 사회 행동과 자기 통제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이며, 능력장애는 기능장애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말하며, 사회적 불리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에서 야기되는 연령, 성, 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 제약 또는 방해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관악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하여 사회심리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능력, 사회적 통합과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로써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다.

[정책 과제]

1.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 제정한다.
2. 지역사회에 인증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공유 및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사회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성]

관악구의 2006년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15,196명으로,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에서 노원구(20,915명), 강서구(19,107명),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1급은 1,274명, 2급은 2,600명, 3급은 2,642명으로 중증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악구의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 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수리 및 지원을 지원책 인 법규 틀 없이 예산지원하고 있어 합당한 지원책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 과제]

1.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생활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한다.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통합사회 구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필요성]

관악구의 2006년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15,196명으로,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에서 노원구(20,915명), 강서구(19,107명),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지역구 중에서 관악구는 제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있다. 시민단체 및 비영리 조직이 활성화 된 관악구의 특성을 잘 살리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민간자원과 공적 자원의 지원 없이는 사회적문제의 갈등의 해소할 수 없다. 가장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대안이다.

[정책 과제]

1.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2. 장애인 우선구매 및 자활공동체 참여 사업을 장애인 우선 참여할 수 있게 사회적기업 전환 및 재활용센터의 민간 참여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참여 유도한다.

정책과제별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장애인 자조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5.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교육을 이수한자를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제 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악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가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11.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12. 장애인가족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중증장애인 2인이상의 장애인가족)

제 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7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직원의 수는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장애동료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간 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교육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회의소집방법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타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악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센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센터

제4장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제14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로 하여금 서비스 지원신청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17조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15조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중개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공적보험 및 배상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구청의 지원)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관악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관악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관악구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관악구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관악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팔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2.“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 3.“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만 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3.“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 4.“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 5.“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정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과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관악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중량구세 감면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기업의 보고 등

제16조(보고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구청장은 구청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1.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와 지역정보에 대한 정보권 확보

관악구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본적인 생활정보와 지역정보에 대한 안내책자와 홍보, 공공기관이용 방법, 등을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공기관 통번역 도우미제도 운영

현재 관악구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행정적 안내에 대한 언어별 안내와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적 서비스와 이주민 관련 행사 안내는 언어별로 통번역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통역 도우미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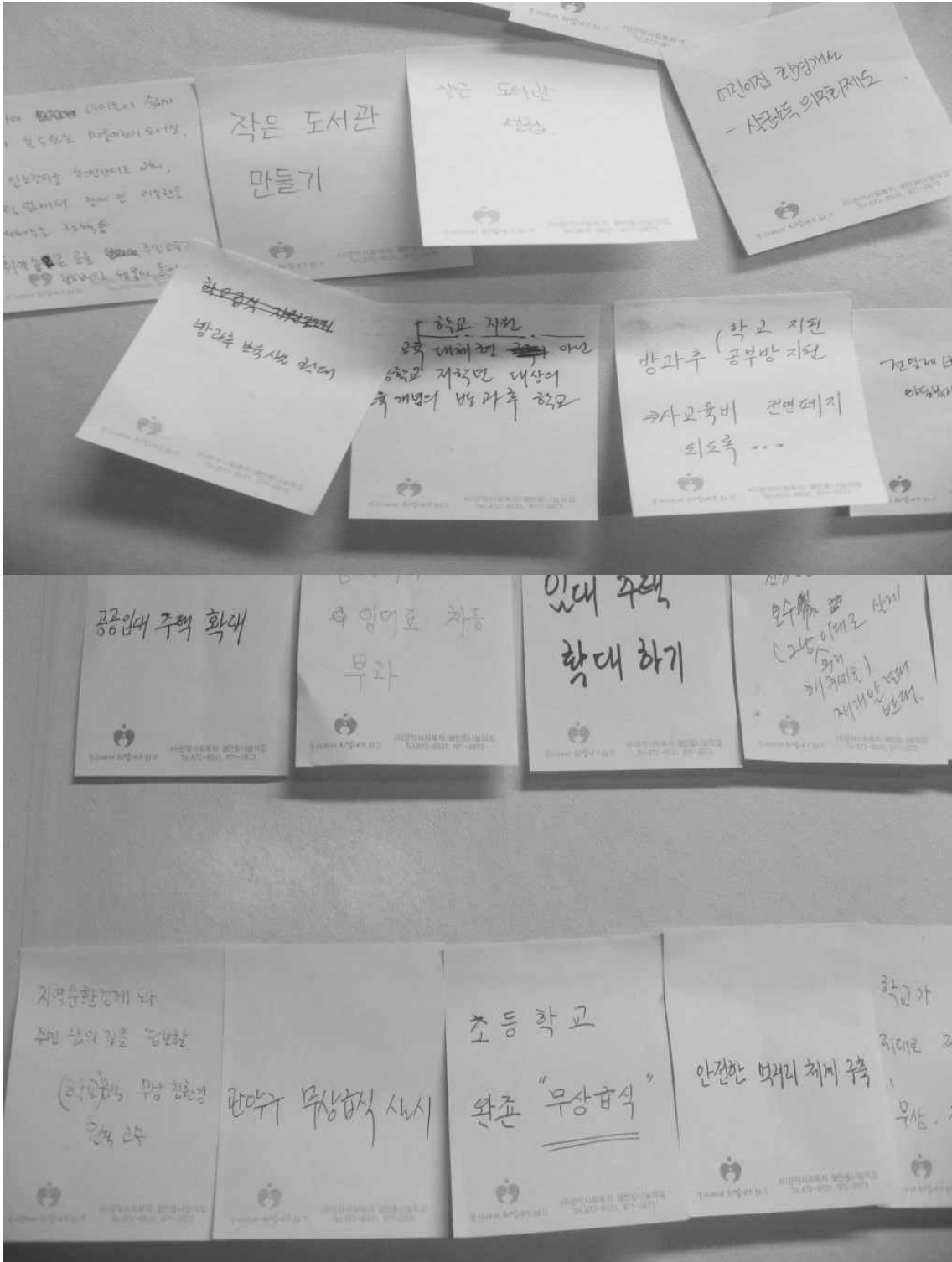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일을 할 때 차별 없는 고용이 실현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들의 이전 직업경력을 단절하지 않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확대 실시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와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자녀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보육시설이나 양육도우미 파견 사업 등을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녀양육에 대한 서비스가 수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

다. 또한 공공보육시설이나 양육도우미 파견 사업 등에 이들의 자녀들이 차별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는 장치와 교육프로그램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이들을 한국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이들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삶의 보장되는 기본좋은 정치
 •의료•교육걱정이 없는 복지마을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필요성>

보육은 개별적으로는 각 아동에게 교육적, 보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넓게는 사회성원의 생산과 유지를 지원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은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정부의 책임 있는 보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 관악구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전체 보육시설 282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 33개소, 법인보육시설 5개소로 (2010년 1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0.7%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이 차지하고 있고 민간의존으로 인해 보육수요자(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공립시설에 줄을 서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이 과포화 상태라 신규설치가 어렵다면 대규모 시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다문화아동통합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책과제>

- 국공립시설 비율 30% 확충
- 소규모 특수보육시설 설치

2. 모든 보육시설에 친환경 급식 실시

<필요성>

성장기의 영유아는 그 어느 연령보다도 음식의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몸의 기관들이 더욱 많은 음식물을 요구하고 있고, 음식의 질과 양에 따라 기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음식물에 따라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렇듯 중요한 음식을 보육시설의 아동들은 많은 부분을 급식(아침, 오후 간식, 점심)에 의존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떤 음식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평생을 가는 식습관이

형성된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클 권리가 있고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정책과제>

- 급식비 지원 예산 확보
- 보육시설 친환경급식 조례제정

3. 보육교사 8시간 노동 보장

<필요성>

보육노동자는 하루 작게는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보육교사들이 1-2년 이 일을 하다 그만 두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육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요구한다. 이렇듯 교사들의 잦은 이동은 건강하게 보호교육 받을 아이들의 권리,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잠시 일하는 곳으로 보육 노동이 자리 매김 되어서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정책과제>

- 비담임교사 등 전문 인력 지원
- 초과근무수당 보장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복지, 생태환경, 일자리창출, 문화 창조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 관악구 무상 친환경급식

[필요성]

- 전국적인 사회 아젠다로 자리 매김 된 무상급식에 주민다수의 요구가 있지만 이와 관련 보수집단을 비롯해 일반여론조차 여전히 무료급식과 혼동하는 중식지원(호혜차원에 저소득층 취약계층대상)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이미 2008년 제정된 자치조례-관악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는 급식”을 규정하고있음
- 이미 2010년에는 초등학교전체 무농약 쌀지원에 4억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3억3천정도의 지출계획을 갖추었으며 나머지 7천으로 중고급식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현재 학부모부담급식비의 10%정도인 쌀소비액에 대한 친환경적용 차액지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친환경급식지원(7개 학교에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차액의 80%)에 7천만원을 별도지원 하고 있음을 기준하여 적정 산출기초작업을 통해 전체학생에 대한 친환경지원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확인함
- 모든 학생들과 관내 아동(영유아, 유치원포함)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 공교육이며 복지며 지방자치임을 함의함

[관내 현황]

1. 무상급식 아닌 무료급식(결식아동지원)
 - 관악사회복지의 행동포럼과 관악구참여예산네트워크 활동결과 확인된내용은 실제 결식지원아동이 중식지원아동의 40%를 못미치는 상황
 - 이와 관련 교육청자료와 동사무소업무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 내용은 이미 조례에 명시돼있음을 인식함
 - 이에 추가로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에 있어 법정내용 근거로 원칙적 접근을 위해 올해지원내용에는 자매결연지역과의 협력사업 형태로 공급방식 지정함(서천, 공주, 강진군)
2. 쌀만 지원하는 친환경급식지원, 자치법도 무시하고 있는 현실
 - 현재 구재정이 부족하여 쌀만 지원하고있음

○ 친환경지원하면서 공급업체선정에 공극적인 친환경개념이 없음(일개업자와 학교 계약을 통한 공급방식으로 학교에 차액지원을 하면서 품질에대한 신뢰 구축 안됨은 물론 학교가 용도의 사용한 사례도 발생함)

○ 또한, 관악구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한 계약생산과 계획생산을 전제로 안정적공급을 위한 현물공급시스템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운영(학생체험, 수학여행, 산촌유학등등..)을 명시해두었으나 실제 지켜지지 않고 예산낭비, 계획부재의 방만한 사업운영 등을 우려케 함

[정책제안]

1. 무상급식은 공교육기본원칙에 따른 교육재정확보가 관건:

○ 교육재정운영은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형식의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청지원금(시설비,운영비,인건비)과 보조금형식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운영되는데 이는 광역-지방 자치 단체간 사업구조에 따른 매칭형태를 적용(교육비로 친환경급식지원, 복지비로 아동급식지원, 환경개선비로 시설지원,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공익(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등..)

○무상급식의 근본적 접근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인데 방식은 현재 주민세 납부할 때 학교에 내는 급식비를 구에서 징수하면 됨(자동적으로 소득대비 차등징수, 급식지원을 통일할 수 있음)

학교급식비 운영

목적별	재원별(세입별)		경비부담(비고)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시설·설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지원 위탁업체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	기부채납/시설사용료지불
	기타	학부모부담금 감가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학부모부담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교육비특별회계	보호자 부담원칙	중식지원
식품비	보호자부담금	학부모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학부모부담
	기타	-	-	-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	-
이동관리비	교육비특별회계 유지비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부담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	-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 보호자부담금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	-
	연료비 소모품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보호자부담금	보호자 부담가능 *설립경영자는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	학부모부담

직영의 경우 학부모부담 학교급식비 일반적 사용비율
식품비 70%이상 / 인건비 21~15% / 운영관리비 9~3%

이빈 파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할 때 가장 선행돼야하는 것은 **첫째,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위 그림중 V표시)중에 시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

통으로 지불해야하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를 우선 확보

둘째, 순수 식품비 중 구가 개입해서 생산 및 공급안정과 가격조정이 가능한 품목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특히 급식지원 체계를 참고, 생산자와의 연대 협약을 통한 생산비 감축 및 조정-식재료비 저감이 선행되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기하급수의 산술로 형식과 선언에 불과한 공수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셋째, 품목별 단계적 지원 및 생산계획마련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 중장기계획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체계구축까지 기대

넷째, 학교를 통한 중식지원과 구 단위의 결식아동지원현황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마련하여 구체적인 **연간계획이 있어야하며**(참여예산정책서 참고바람) **이 재원마련은 그동안 학부모가 학교에 내던 급식비를 구로 납부하게 하면 된다.(소득 할분할 지방세형태로 자연스럽게 차등분할)**

2. 친환경급식원칙으로 구에서 생산-공급-유통책임 관리를 위한 급식지원센터설치

○ 급식지원센터는 구청 교육지원과에 설치하고 급식심의위원과 전문가, 생산지관계자, 공급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한 협력기구여야 함: 해당위원의 업무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같은 기능수행

○ 급식지원센터의 像
_ 아래 그림 참고

○ 추가적으로 현재 관내 상치된 텃밭활동과 지역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장 운영필요

⇒노인일자리 창출, 학교교육프로그램상설운영, 지역내 생태체험학습장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먹을거리정책(관악형 로컬푸드 체계)확립도 가능하며 도시 생태적 협동조합운영으로 주민공동체실현도 기대할 수 있음

3. 무상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예산마련에 있어 지방재원확보방안=학부모부담 급식비를 구가 징수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나 조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거나 하는 불편함도 예상하지만 현재로도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면 당장에 전체 초등학교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냈음

초등학교전체 학생 26,834명의 급식비는 연평균 88억5천 만 원(1식 2000원으로 약

지역형 학교급식통합관리 거버넌스



이민파binpa@naver.com

<그림. 급식지원센터설치와 필요에 따른 부대시설운영모델>
 식기준)이며 이중 식품비로 평균90%사용기준하면 79억6500만이고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재원은 시비: 구비로 39억825만이면 초등전체 무상급식을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음

⇒ 관악구예산에서 39억원은
 삼모스포렉스 앞 인도교(?) 20억원자리 두개만 안지어도
 도림천 바윗돌 깔기 예산 50억원
 낙성대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의 구간에 가로등교체비용 50억원만 안 썼다면 충분했
 다!

• 관악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역아동 접근성 확보된 아동도서실건립(기존시설(새마을문고) 또는 주택활용)과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실
- 현재 학교마당이 인조잔디로 모두 전환된 상태에서 학생건강은 물론 환경적인 문제발생해소필요
- 1%의 영재교육보다 다수의 보편적 권리보호 차원의 공교육 정상화 필요: 교육복지우선투자선정지구 지원 사업 확대필요
- 전시성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 전환 필요
- 기타, 어린이집 환경개선(살균소독 강화), 학교에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파견, 사서지원

[관내현황]

1. MB식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당곡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미림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유치
 - 당곡중 지하주차장 및 시설복합화사업비 34억원 (총사업비 97억9900만원 중 서울시46억4300만원, 동작교육청이 17억5600만원)
2. 사교육비 저감을 위한 교육지원명분으로 공교육과괴위험 우려되는 고급과외운영
 - 영재교육지원 2억6100만원, 영어타운과 교육지원센터설립 156억원(공교육특구 지정사업 신청비)
 - 교육경비보조금 51억, 대학생멘토링 2억4천
3. 학생건강외면 인조잔디구장설치 1개교 당 최하 7억5천 이상 소요

[정책제안]

1.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시설 및 재원확충
 - 컴퓨터교체, 책걸상교체, 학생-교사의 교육권확립, 교구 및 교육시설확충
 - 학운위 활동 우수학교, 교원평가 없는 학교, 교육공동체시범학교(학교생협 등) 시범 지정 학교운영지원
2. 사서, 상담사 파견 상설운영체제구축
3. 잘못된 시설개선: 주차장용도변경, 천연잔디구장설치,
4. 외국인자녀 교육지원활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관악구 청소년 문화생활지원

[필요성]

- 청(소)년 중심 독립된 문화생활 공간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정책필요
- 적어도 동별 1개소의 문화공간필요
- 교육지원형태의 예술가양성: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필요(, 예술창조공간 제공)
- 놀이문화 창조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고마운 사회교육, 자발적 이주민발생유도, 폭력없는 사회구현 필요

[관내현황]

- 관악청소년회관,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문화원이 있어도 청소년의 활용도는 물론 접근성 떨어지며 평생학습관, 고시생공부방으로 전락하여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어요!
-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동아리활동, 정책수립정치활동 등 보장되지 못함
- 계층양극화현상심화수준

[정책제안]

- 놀이문화, 학습공간, 예술활동 지원 등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
- 관악관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지속적 후배양성, 사회교육양성으로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순환교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네, 떠나지 않는 동네를 만들자

주민건강살피기

보건지소 예방기능강화

1) 필요성

예방의학은 사람들을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질병의 예방, 건강 증진의 복합적인 개념이다. 우리 삶에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한 낮춰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로 나누어 예방을 진행해야한다. 개인은 개인의 위험요인 평가와 교육, 선별검사 등의 건강상태 평가방법 등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해야하며, 지역사회에서는 공중 보건(Public Health)을 말할 수 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공공보건정책의 중심인 보건소가 예방의학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은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2, 3차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정책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1차 예방을 중점으로 지역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지금 사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양질의 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로 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이 개인(지역주민)과 함께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필요에 민감하고 일상적인 주민들의 건강관련 교육 및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적인 공간으로 보건지소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책과제>

1. 보건지소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2. 보건지소 내 건강도서관 운영

건강한 마을만들기

주치의 사업 단계적 실시

<필요성>

주치의 제도는 체계화된 일차의료시스템이다. 일차의료는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이다. 주민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예방과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차의료이다.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를 튼실하게 하는 주요한 제도이다.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등으로 큰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결과적으로 의료비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 의료서비스와 방식을 표준화하여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의 중심으로 개별적인 일차진료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신뢰관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과제>

1. 주치의 사업계획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 ~ 2014)에 수립한다.
2. 관악주민 주치의 갖기 홍보캠페인 사업
3.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1. 종합적인 주거복지 상담창구

1) 필요성

주거서비스(취약계층, 빈곤가구 등)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이 어떠한 주택인지,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실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은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후 복지서비스의 통합으로 진행된다면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2) 현황과 문제점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2008년 ‘알기쉬운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도시연구소 자료참고>

구분	프로그램	신청기관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동사무소
	국민임대주택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재개발 임대주택	sh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동사무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동사무소 또는 주택공사
	기타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등
주택임차금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동사무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은행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 대출	은행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	자치구
	민간임대주택 월 임대료 보조(서울시)	동사무소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대출	자치구 등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	동사무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동사무소
	민간단체 등 주택개량 지원	해당 단체 등

이 중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주택정보제공은 각 주택별로 시행처 및 운영주체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 자신의 조건 등을 확인해서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 주택을 원하는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상담이 필요하다.

3) 정책과제

－ 관악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수요자가 찾아오게 되면 수요자의 현황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신청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1차적인 통합상담을 통해 주택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연결하여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주민자치센터에 주거복지전담요원을 배치하거나 구차원의 주택과 산하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2.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1) 필요성

주거취약계층은 누수, 도배장판, 보일러, 수도, 전기, 형광등 교체 등의 기본적인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인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황과 문제점

○ 주거복지의 특성상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대부분 국비, 시비에서 해결이 가능하며 현재 주거복지의 정책도 물량공급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주거복지에서는 물량공급의 하드웨어적 접근도 있지만 기존 주택거주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동주택단지 관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문화 만들기, 생태조시 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부족한 예산안에서 관악구는 저소득이하의 계층에 대한 집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취약계층(노인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계층입니다.

○ 관악구 주거복지 분야는 직접서비스 보다는 국, 시 사업의 집행(자금대출, 임대주택 알선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 기존 주거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고, 이후 이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3) 정책과제

○ 서비스 목록 : 누수, 도배장판, 형광등 교체, 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기본 삶의 영위하기 위한 필요 서비스

○ 대상계층 : 저소득, 차상위, 수급자 중 노인단독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을 중심으로 하며 점차확대

○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위한 현황조사 : 구청+민간자원(주거복지팀 등..)

- 주거서비스 욕구 조사를 위한 민관협동팀 구성
- 주거서비스 대상자 파악과 조사인프라 구축(민·관인력 활용)
- 주거서비스 욕구조사
-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 맞춤형 주거서비스란?

-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 긴급하고 항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일종의 긴급출동 서비스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개발 관악구 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매스미디어가 점차 대규모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소수의 자본이나 정치권력에 장악됨으로써 일반 대중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게 됐다. 미디어센터는 주류 미디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발언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라고 하는데 일반 대중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제작 기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악구의 조건에 맞는 퍼블릭 액세스의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디어센터는 기술습득 중심의 일회적인 교육, 혹은 창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배제됐던 다양한 주체들이 미디어를 통해 만나고 소통하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개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센터는 특정공동체를 상대로 공동체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센터 이용자들의 모임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자발적인 미디어 관련 모임들을 지원하고 센터 사업과 연계하며, 다양한 계층별, 주제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ex) 이주여성공동체, 장애인공동체, 교육공동체, 자활공동체, 노인공동체, 청소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미디어 및 퍼블릭 액세스 교육 -> 미디어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라디오 및 신문을 활용해 각 공동체의 발언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하게 함.

미디어센터는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기지로서 지역미디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디어센터는 27곳이 설립돼 활발하게 운영중이다.(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는 제외한다.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 믿는다.) 그 중 12곳은 지자체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시민사회단체가 설립주체이다. 서울의 경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법적으로 서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 과제]

1. 관악구 미디어센터의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1. 지역내 여러 계층들의 미디어 이용 불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2. 미디어센터 사업의 범위를 정한다.

2. 관악구 미디어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3. 관악구 미디어센터를 건립한다.

<참고자료>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센터란 미디어가 의사소통의 핵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자유롭게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1세기 정보영상시대의 새로운 공공문화기반시설이다.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미디어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장비시설, 미디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료와 상영 공간 등을 설치·운영하며,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민주적인 소통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고, 다수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며, 시민들의 다양하고 공공적이며, 비영리적인 미디어활동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개발을 지원한다.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

관악구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필요성>

어린이들이 누구나 한글을 배울 권리가 있듯이 문화예술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일년에 1-2번 음악회를 다녀오는 것보다는 영화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매주 좋은 영화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가까이 있는 것! 밴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문화예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공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문화예술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향유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창조적인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관악구 문화정책의 성과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주민문화향유 기회확대 주요사업의 경우 지역축제 및 이벤트성 공연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확충 역시 관악문화원 지원에 대부분의 자원이 배분되고 있고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클럽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계획은 전무하다.

<정책과제>

1.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설치

2.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3. 지역문화발전기금 설치

10분 거리마다 책 읽는 마을

작은도서관 확산사업

<필요성>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420여 개관, 도서관 1개당 인구수는 11만 5천 여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OECD) 중 꼴찌인 155위이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의 도

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1000개가 넘는 분관(작은 도서관)이 있다. 인구수가 40만인 스페인의 경우 3,380개의 도서관과 3,600개의 분관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어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놀며 책 읽기를 가까이 한다고 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 곳에 있어야 하며, 그 곳에서 차별 없이 지식, 사상,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밀착적이며 주민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의 모델로 작은도서관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집 근처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 및 문화, 그리고 주민들간의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는 생활친화적인 지역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도서관은 국공립도서관이 있고 학교나 대학등에 설치된 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관리지원하는 새마을 문고와 자치단체별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문고들이 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라는 명칭 대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명칭을 행정에서 받아 '작은도서관'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이며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접근성'이란 주로 10분 이내의 단거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시설은 50평 내외의 소규모이다.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천, 순천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되는 작은도서관 사례가 알려져 있다.

명 칭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및인원
관악문화관·도서관	대학동	지2층~5층 (14,279㎡)	공연장(698석), 전시장, 열람실(532석) 등	3개과 30명
성현동작은도서관	성현동	5층(329㎡)	열람실(91석) 등	사서 3명
글빛정보도서관	청림동	지1층~4층 (693.98㎡)	열람실(139석) 등	사서 4명
은천동작은도서관	은천동	4~5층 (457.3㎡)	열람실(81석) 등	사서 3명

관악구에는 공공도서관으로는 신림지역에 2002년 건립된 관악문화관도서관 1곳과 봉천지역에 작은도서관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 문고는 각 동마다 존재하여 주민과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좋은 조건임에 불구하고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 자원봉사자들 관리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개관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새마을 문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등 공공시설을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아담하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매년 책을 구입하고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과제>

1. 주민참여형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조례 만들기
2. 걸어서 10분 작은 도서관설치확대
3. 지역사회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인간이 조화로운 기분좋은 정치
개발이 없는 생태마을



자치가 실현되는 기분좋은 정치 주인되는 민주주의마을

정책 : 참여 예산제

◎ 동네에 생길 변화

- 주민투자가 반영된 예산 집행
- 주민들의 행정·의정 참여 활성화
- 행정·의정의 투명성 제고

◎ 정책 실현 방안

- 조례 제정 (시민 배심원제 or 100인 위원회)
- 예산 집행 관련 일상적 정보 공개 요구
- 주민 청원 병행

◎ 관심 가진 주민

- 관악구민 모두
- 특히 구 예산 집행에 민감한 저소득층·소외계층

◎ 정책을 홍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

- 타지역 사례 홍보용 자료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
- 민의 예산 의회 개최 (매년)

■ 주민 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및 필요성]

“예산이 곧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현된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가 곧 해당 자치단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변한다.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도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제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관악구의 경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03년부터 매년 구 예산안을 분석해서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심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역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 과제]

○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든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주요 내용(대전 대덕구 참조)

1. 취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악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1) 관악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10인 이내의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3) 구청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자체 사업 예산 편성·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4) 구청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책임 있는 행정/의정 - 정책실명제/의원투표실명제

[문제점 및 필요성]

행정에서 가장 큰 예산낭비 및 무책임의 사례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누가 제안하고, 누가 적극 추진을 주장했느냐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된 뒤에 부적절한 정책이었거나 무리한 정책으로 판정된 경우, 제안한 공무원이 알려지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모든 정책에 정책실명제 도입과 그에 대한 명확한 정책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의회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 역시 필요하다. 주민을 대표해서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고려했을 때 본회의, 상임위 안건처리 시 의원들의 찬반 의사표명 결과가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을 의식하도록 해야 하고,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과제]

○ 정책실명제 및 평가제 도입

-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기안하고 추진하는 책임자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한다.
- 공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를 홈페이지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이 참여하

는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 의원투표 실명제

-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할 경우 의원 별 찬반 여부를 회의록에 기재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인사 비리 없는 관악 - 개방형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점 및 필요성]

관악구는 4기 민선 구청장의 인사비리 문제로 인해 한동안 구정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구청장이 타 구청에 있는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영입하고, 친척을 인사계장으로 앉혀놓은 후 직원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며, 인사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자료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사비리를 저지르다 법원의 판결로 처벌을 받았다. 총체적인 인사비리가 자행된 것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인사비리는 주민들의 정치혐오주의를 부추기며 지역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뇌물수취와 인사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인사위원회 제도가 있으나 노동조합이나 외부시민사회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부족하며 매우 제한적인 적이 현실이다. 또한 비리문제의 은밀성을 고려했을 때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역시 필요하다.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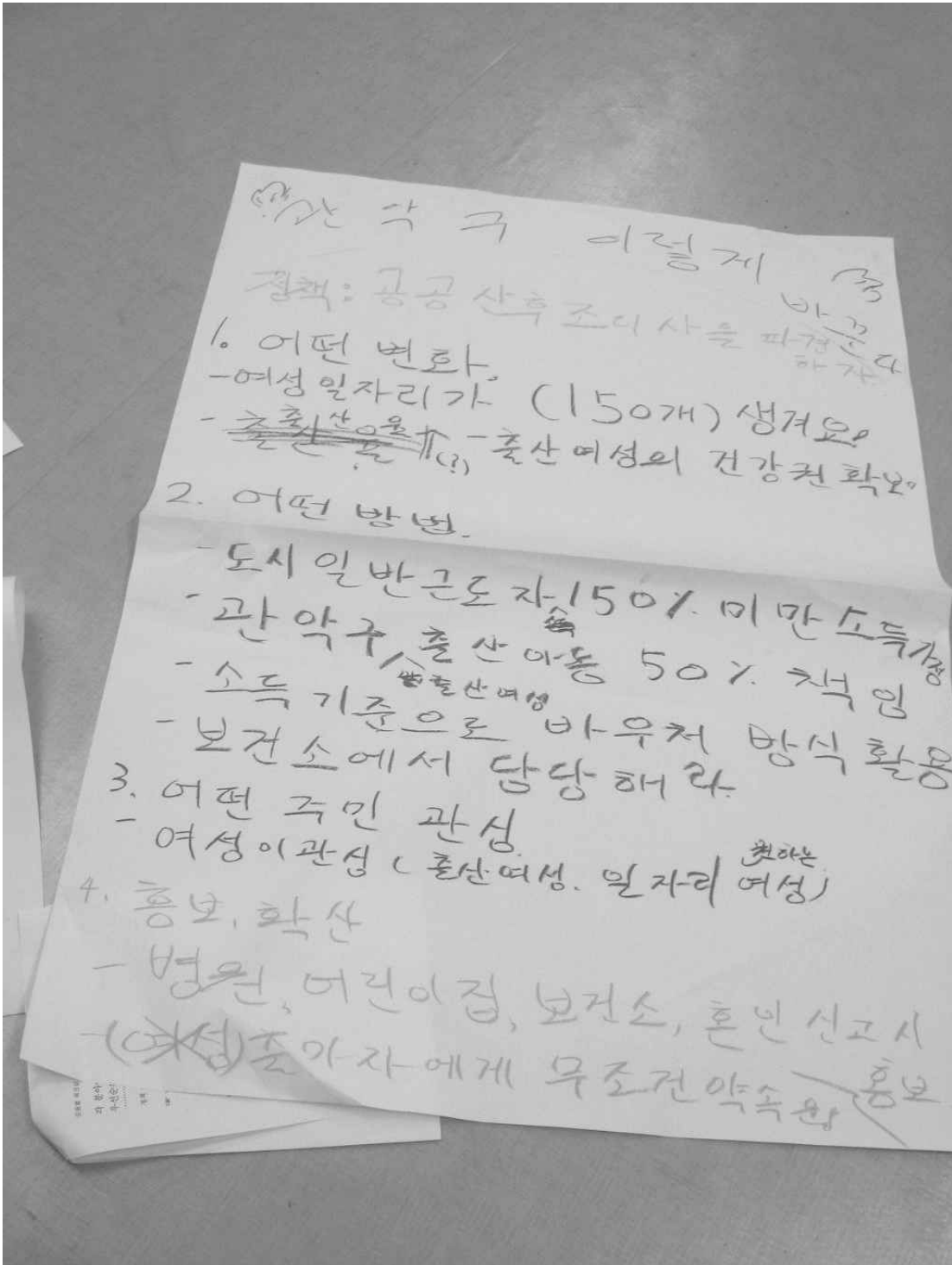
○ 개방형 인사위원회 구성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장이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다.
-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 내부고발자 불이익 방지

- 뇌물수취, 인사비리 문제를 감사원 등에 고발한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 법규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배치전환, 승진봉쇄, 강제퇴직 등을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살아가는 기분좋은 정치
맞서는 협동경제마을



1. 관악구 주민이 함께 하는 생활협동조합 만들기

<정책과제>

- 지역형 생활협동조합 조례제정
- 생활협동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 생활협동조합 기금 마련
- 생협 매장 개설

<필요성>

○ 생활협동조합(生活協同組合, consumer's cooperation·Cooperative)은 구성원(조합원)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이다.

○ 영미권에서는 협동조합(Cooperative)과 소비조합(또는 생활협동조합, consumer's cooperation)을 구분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영문 명칭에 'Cooperative'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활협동조합과 일반 민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이 있으며 먹거리유통을 위주로하는 소비자생협, 의료보건활동을 주요사업으로하는 의료생협, 대학시설운동을 중심으로하는 대학생협등으로 나뉘어져있다.

○ 생활협동조합이란 생산자로부터 직접 생활 물자를 싼 가격에 살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사전적 의미임.

○ 관악구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성을 살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도농 자매결연 등) 연결을 통한 상생의 이념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기대효과

- 안전한 먹거리를 편리하게 구매하는 방법임.
- 지역내 생산품의 내부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
- 생산, 소비, 유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

-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 가능
- 주민을 위한 보험과 상조사업개발 가능
- 농산물소비조합 - 일자리창출, 안심 먹거리 확보, 주민공동체 확립
- 소비조합 - 농촌과 자매결연/ 주민출자, 주체적으로 운영
- 지역화폐 만들고 유통시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간의 공동체성을 확대할 수 있음.

<현황과 문제점>

○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례

[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목적]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경위]

주민교회에서 생명문화 창조운동으로 시작되어, 먹거리와 생활재를 통하여 농촌과 땅을 살리는 운동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정치구조 속에서 과생된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는 운동을 진행하고자 설립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에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0년 10월에 발기인 37세대, 출자금 1,152,000원으로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가졌으며, 1991년 4월에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93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9년에 정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2000년 3월에 자율적이며 더불어 사는 주민생활협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자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변천]

1995년 12월부터 창조학교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 3월에는 일본 동경생활클럽생활협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정자동에 분당센터를 개소하였다. 2001년 2월에는 유치원인 '덩더쿵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현재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분당 매장, 수지 매장, 성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사업, 창조학교, 유치원인 ‘덩더쿵어린이집’ 등 어린이 교육 사업이 있고, 단오 한마당, 어린이 벼룩시장,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활동사항]

1998년 4월에 실직여성가장돕기 지원사업으로 500세대에 쌀공급을 하였으며, 2002년 6월에는 지역과 함께 하는 단오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2003년 11월에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지역의 교육·여성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2006년 2월에는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전21’을 발표하였다.

[현황]

현재 조합원은 4,700여 명이며, 그 중 3,500명 가량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조직]

의결기관으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으며, 총회를 갈음 할 대의원 총회를 두고 있다.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수는 100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이다. 지부는 성남지부, 분당지부, 수리지부가 있고, 이사회와 마을위원회, 생활재위원회, 환경위원회, 회보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된 조합원 위원회가 있다.

조합원 모임으로는 아토피자녀를 둔 조합원들의 모임인 ‘아토피 모임’과 풍물, 미술, 한자 등 교육프로그램인 ‘어린이문화마당’, 나들이 소모임인 ‘산 바람 아이’, 조합원들이 사진을 배우는 ‘사진교실’, 자연친화적 놀잇감을 만들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소모임인 ‘소꿉놀이’, 풍물모임인 ‘두드림’, 수리지역 어린이 나들이 모임인 ‘등글게’, 수리지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인 ‘벚꽃나무’가 있다. 대안교육모임으로는 ‘창조학교’, ‘덩더쿵어린이집’, ‘작은나무숲’, ‘너랑나랑산이랑’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생명문화 창조운동으로 시작된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현재 관악구에는 생활협동조합 관련 통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관악구 지역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매력이 있는 사업임.

- 관악구내 생활협동조합 현황
 - 서울대생활협동조합
 - 한 살림, 두레생협, 자연드림 등 매장이 있음

2.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 지역형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 지역형 사회적 기업 기금 조성
- 지역형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 구성
- 지역형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필요성>

-  사회적기업이란?²⁾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²⁾으로
좋은 일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

01. 사회적기업의 개념



- 협의 (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2) 기업 홈페이지 참고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협약(법 제2조)**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02.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으로 결정

03.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활동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소비문화조성

○ 사회적 기업은 위와같이 사회적 목적실현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재생산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

○ 관악구는 경제적으로는 중소기업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관악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적 토대가 없음.

-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형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은 관악구의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 사회적 영역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지역 특화상품으로 제작

- 관악구 특산품 개발 및 생산 (예-서원동 순대타운 일대를 시민이 즐겨 찾는 관악의 대표적인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고 순대공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

- 유통체계 및 내부소비시스템 구축

- 사회적 기업에서도 지역화폐 유통

<현황과 문제점>

○ 관악구에 소재하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현황

- (주)나눔공동체 <http://www.nanumfood.co.kr>

- (주)푸른환경코리아 <http://www.purenkorea.com>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실로암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단) <http://www.silwel.or.kr>

- 씨엔에이치종합건설(주)

○ 현재 관악구에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4곳임.

- 고용창출 효과 및 사회적 이익에 대한 통계는 조사가 필요.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도 활성화 계획을 내놓고 있음

- 노동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2012년 까지 1,000개를 만들겠다고 함.

- 이미 2009년말 11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1차 선정 완료하였음.

○ 아직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 기업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사례는 없음.

○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사례

<지자체 사회적기업 육성 박차>

인건비 지원·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 부여
강원도내 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점차 확대하고 발전시킬 경우 복지증진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를 비롯, 각 시·군에서 지방 차원의 육성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때에는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며 대학(원)과 협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도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가칭)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하반기 중 제정 추진,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사회적기업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초기 설비비용 지원 및 안정적 수익구조로의 기업 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 시·군별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시책안을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내년부터 예산편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강원도내에는 원주의료소비생활협동조합(간병·가사지원), 강릉 환경지킴이운동본부(재활용품 수집판매 등), 강릉 사랑의도시락(급식지원), 동해·영월 늘푸른환경(청소·소독 등) 등이 활동중에 있다. 이 기사는 강원일보에서 인용하였습니다.

3. 청년실업자 및 퇴직자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창업전문재단(창업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관련 지원 시스템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아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함

<현황과 문제점>

- 관악구의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
 - 취업정보센터 소개
 - 생활복지과 내에 위치한 취업정보은행은 노동부 WORK-NET을 통한 구인·구직자 연결 및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일자리 검색, 무료통화, 이력서 송부 등 구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스, 전화기, 팩스밀리 등 행정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등 실직자 지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자 취업정보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는 구인·구직등록 및 노동부 WORK-NET 연결 취업알선, 취업관련 정보 제공, 고용촉진 위탁훈련, 공공근로사업 진행함.

<정책과제>

- 관악구내 취업 및 창업지원기관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의 창업전문재단(지원센터) 신설
- 창의적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금 조성
- 폐업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재기를 지원하는 양질의 직업교육지원